

『2021년도 제1차 특정감사』

**2020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이행실태
특정감사 결과보고**

2021. 2.

 **감사실**

2020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

1 감사 개요

□ 감사 목적

-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및 임직원 외부강의등의 운영절차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
- 외부강의를 우회적인 금품 등의 수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민관 유착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방안 마련

□ 감사 근거

- 감사직무규정 제16조(연간감사계획의 수립)
 -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보고(감사팀-200, 2021.01.28.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□ 감사 대상 및 범위

- 대상 : 외부강의 및 겸직 허가 등 이행분야 전반
- 범위 : '20. 7. 1. ~ 12. 31. (하반기 임직원 외부강의등 신고·활동 내역 일체)
 - *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7항에 따라 상·하반기 2회 실시

□ 감사 인원 및 기간

- 인원 : 감사실 ○○○ 외 2인
 - ◇◇◇(감사반장), ★★*, ♥♥♥
- 기간 : '21. 1. 27.(수) ~ 2. 2.(화)

□ 감사 중점사항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사후신고 및 보완신고 기한 준수사항 점검
- 직무관련성 등 외부강의등에 해당여부 확인 점검
-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 준수사항 점검
- 외부강의등 허용 강의 횟수, 근거 공문서 등 확인 점검
-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 현황 점검
- 외부강의등 미신고, 사례금 부정수급 등 관련 리스크 점검
- 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개선 방안 마련

2

감사 결과

□ 감사 총평

- 외부강의등을 신고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과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
- 그러나 외부강의등에 대한 확인결과 일부는 외부강의등을 위해 출장명령을 득하였으나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 후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확인
- 최종 결과, 총 2건(주의2)에 대하여 외부강의등을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촉구

□ 감사 지적사항 총괄

합계					신분상 조치				재정상 조치			행정상 조치						현 지 조 치	수 범 사 례	
총 건 수	신분상 조치인원	행정상 조치건수	재정상 조치금액	현 지 조 치	소 계	징 계	경 고	주 의	소 계	변 상	시 정	소 계	시 정	경 고	주 의	개 선	권 고			통 보
2	2	-	-	-	-	-	-	2	-	-	-	-	-	-	-	-	-	-	-	-

□ 분야별 지적사항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지적내용	관련 부서
1	외부강의등 출강 시 출장복명 처리 미흡	주의	외부강의등 출강 복귀 후 출장복명서 미제출	♣♣♣
2	외부강의등 출강 시 출장복명 처리 미흡	주의	외부강의등 출강 복귀 후 출장복명서 미제출	□□□

□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○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

순번	제목	처분요구		관련부서	비고
		처분 종류	신분상 조치		
1	외부강의등 출강 시 출장복명 처리 미흡	주의	1명	♣♣♣	-
2	외부강의등 출강 시 출장복명 처리 미흡	주의	1명	□□□	